



산림경영의 폐러다임 전환

산림청 임업서기관 전진표

지구상의 생물종이 감소하고, 물부족이 심각해지고,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등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는 징후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제는 깨끗한 물과 공기 마저도 사서 마시는 시대가 되었다. 산업화의 극상에 달한 일부 선진국은 주도적으로 세계환경을 치유하고 보호하고자 앞장서고 있고, 개도국은 빈곤 해결이 관건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가시적으로 들어난 세계적인 사건이 바로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 자네이로에서 열렸던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UNCED)이다.

이 회의는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세계 각국의 정상급 고위관리가 한자리에 모인 지구환경정상회담이었다. 환경개발회의라는 회의명칭이 말해주듯이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이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며, 대립적이라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의 설정을 암시해 주고 있다. 이전에도

자연과 인간간의 새로운 관계설정으로 인류의 존속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특히, 노르웨이 전 수상 브런트랜드 여사의 이름을 본따서 일명 브런트랜드 위원회라고도 불리는 세계환경개발위원회(1983 창설)는 1987년 “우리들 공유의 미래(Our Common Future)”를 출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개념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미래세대의 소요를 손상시키는 것이 없이 현세대의 소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발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UNCED에서는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선언적 규범인 리우선언, 동선언의 실천강령인 『의제21』, 산림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문인 『산림원칙』,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을 채택하였다. 또한 40개 장으로 구성된

『의제21』의 진전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 UNCSD)를 발족하였다. 제3차 UNCSD('95. 4, 뉴욕)에서는 『의제21』중 산림황폐방지(제11장)등 산림관련 주요 의제만을 별도로 집중논의하기 위하여 정부간 산림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Forests : IPF)을 발기하여 이미 세 차례의 모임을 가졌으며, 제4차 최종회의('97. 2, 뉴욕)만을 남겨두고 있다.

UNCED를 전환점으로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的 이념에 부합하도록 지구의 산림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경영해 나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틀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유엔채널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제의 핵심이다. 『산림원칙』 2(b) 항은 “산림자원과 임지는 현재와 미래 세대의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 정신적 소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의 정의를 내린 격이 되었다. 동원칙에서 규정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도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ESSD)원칙 하의 산림경영을 의미한다.

산림의 경영은 전통적으로 목재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保續經營(Sustained Yield of Timber)에 중점을 두었으나 1940년대 이후 산림의 적·간

접적 효용을 다양하게 이용하자는 다목적 경영(Multiple Use Management)의 이론이 대두되었고, 최근에는 산림생태계 경영(Forest Ecosystem Management)의 실천을 위한 기본 배경이 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태동하면서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할 것인가가 주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물론 1984년 발족된 국제열대목재기구(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Organization : ITTO)는 UNCED 이전에 이미 열대림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기준과 지침을 개발한 바 있으나, 지구상의 모든 종류의 산림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열대개도국의 주장에 따라 온·한대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경영 기준과 지표의 개발도 지역국간의 주요 관심사항이 되었다. 따라서 1993년부터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정성적 기준과 지표를 개발하려는 지역국간의 공동협력체가 발기되어, 아시아·태평양권의 국가들로 주축을 이루는 『몬트리올 프로세스』, 유럽국이 주축을 이루는 『헬싱키프로세스』, 아마존 산림권역에서는 『아마존협력조약』, 『아프리카의 건조지역국 협의체』 등 각 단체 나름대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기준과 지표를 이미 개발했거나 논의중이다.

ITTO도 이와 같은 지역협력체의 기준과 지표의 개발논의와의 수렴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으로 산림경영단위 차

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과 지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1997년부터 실무전문가 회의를 소집하여 기존의 열대림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기준과 지표를 더욱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국제적 논의동향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도 산림정책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산림청은 UNCED에서 채택된 『의제21』과 『산림원칙』의 이행과 함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임업발전은 물론 지구산림보전에 기여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UNCED, UNCSD, IPF, 몬트리올프로세스, ITTO등 국제논의에 적극 동참하여 왔다. 또한 산림법을 개정('94)하여 산림기본계획 수립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반영되도록 하고(산림법 시행령 제5조, '95. 6.23), 이의 이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산림생산력의 유지등 몬트리올프로세스에서 채택한 6개 기준을 이용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산림법 시행규칙 제3의 2, '95. 8.30)

산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경제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은 국내외적으로 당면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앞으로도 산림협약의 제정 가능성 등 국제사회의 산림논의 동향을 주의깊게 파악하여, 이에 대처해 나가야 함은 물론 국내적으로는 우리의 현실임업에 적합하고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과학적·기술적·제도적 수단을 개발하여 국유림과 민유림의 경영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s for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 OECD) 파리본부에서 외무부장관이 서명하고 12월 12일 정식 회원국이 됨으로써 29 번째의 선진국 클럽회원이 되어 명실공히 선진국 대열에 끼어 들었다.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과정에서 이룩해온 산림녹화의 성공을 밀거름삼아 이제는 우리의 임업도 세계 속의 한국임업으로 발전시켜야 하겠다.

경제를 살립시다.

— 경제가 살아야 임업도 산다 —

과소비 줄여 경제선진국 이룩하자